



가정통신문

(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학교 방역수칙 안내)

<http://www.jbg.kr>
전북여자고등학교
(2021. 2. 25.)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개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매일 점검, 관리하고 있습니다.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**매일 등교 전 학생의 상태를 확인 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에 체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** 아울러 코로나19관련 학생 생활수칙 및 등교관리기준 등을 안내드리오니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<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 >

■ 시작일

- 재학생은 2. 27일부터(신입생은 3월 2일부터, 원격수업 포함), 매일 등교 전 가정에서 실시

■ 참여방법

- (자가진단 참여 서비스 제공형태) 앱(스마트폰 등) 또는 웹(PC 또는 스마트폰 등)
 - 앱(App): 안드로이드 및 iOS 앱 스토어에서 '건강상태 자가진단(교육부)' 설치
 - 웹(Web): (참여자) hcs.eduro.go.kr

- 1학년: 자가진단시스템 웹(앱) 실행 → 학교찾기/학생이름/생년월일 입력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→ 비밀번호 설정 등 진행 → 자가진단 참여
- 2,3학년: 기존 비밀번호로 자가진단시스템 웹(앱)실행

※ '20, '21학년도 학교가 동일한 학생이 기존 비밀번호 로그인인 안되는 경우 조치방법 >

- '21.2.28.까지 비밀번호 숫자4자리로 로그인하여 사용하였으나, '21학년도 시작시점인 '21.3.1.부터 비밀번호 숫자4자리로 로그인 불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
 ↳ 조치방법: 자가진단시스템 웹(앱) 실행 → '다른계정로그인(다른계정 로그인)' 클릭 → '예' 클릭 → '자가진단 참여하기GO' 클릭 → 자가진단 처음 사용자와 동일하게 학교찾기/학생이름/생년월일 입력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→ 비밀번호 설정 등 진행 후 자가진단 참여

■ 자가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

① 정상 으로 자가진단	→ 등교 가능
② 유증상 으로 자가진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①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중지 및 선별진료소 문의·진료 받기 ②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학교에 알림 ③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정 내 자율격리 ④미검사자 또는 음성판정을 받은 학생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⑤ 등교시 출석인정서류 제출 (학부모의견서,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,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, 진료확인서 등)

< 코로나19관련 등교 시 안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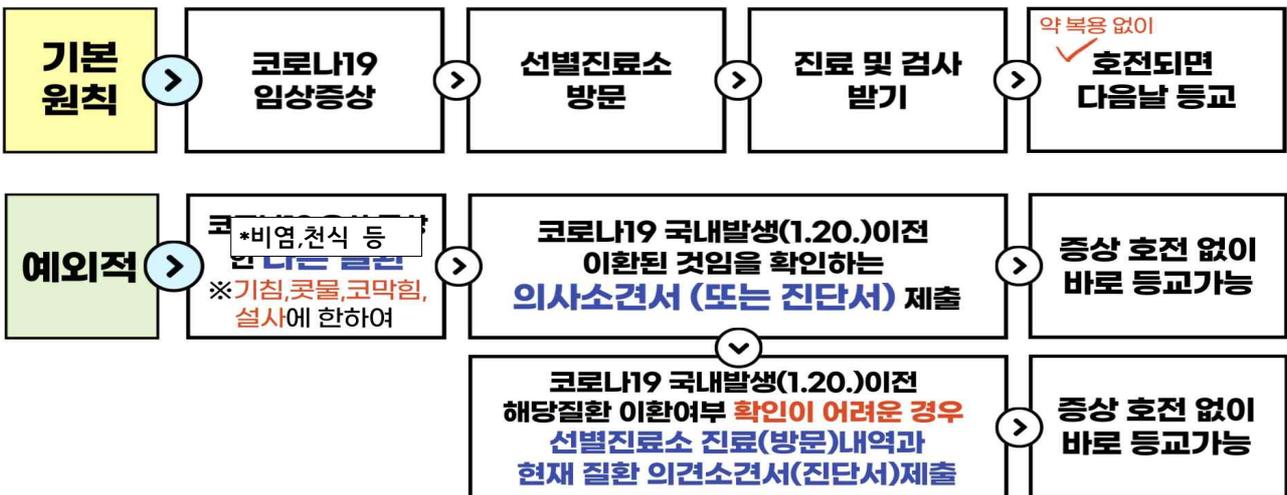
■ 등교 시 학생 생활 수칙

- **상시 마스크를 착용**하고 등교합니다. 기저질환(소아당뇨, 심장질환 등), 호흡기 민감군(천식 등)은 보건용 마스크(KF 80이상)를 착용하도록 합니다.
- **등교 시 준비물: 개인 손수건(휴대용 휴지), 개인 물통, 마스크 여분 등**
- 등교할 때는 '생활 속 거리두기'를 실천합니다. (2m 이상 거리두기, 신체 접촉하지 않기 등)
- 매일 3회 발열검사 실시: 가정에서, 등교 시, 점심식사 전
- 개인위생관리 철저: 손씻기, 기침예절,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 만지지 않기
- 교실 등 창문을 수시 개방하여 충분히 환기하기(수업전, 수업 시 창문 및 출입문을 열어 자연환기)
- 컵, 물병, 필기도구,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 나눠 먹지 않기
- 교육활동에 따른 교실이동, 쉬는 시간 중 화장실 이용, 급식 이용 및 음용수 섭취 등을 제외하고는 교실 간 이동 및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

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의 대응 절차

단계	장소	내용	조치
1차	가정에서	가정에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→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	- 위 내용 참조
2차	등교 시	본관 1층 현관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 대상 열화상 카메라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후 교실 내 입실	- 발열검사 결과 37.5°C 이상이면, 안정을 취한 후 고막체온계로 재측정 - 37.5°C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,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진료검사 실시
3차	급식 전	급식실 입실전 보건실 앞 열화상카메라 발열검사 후 급식	- 학생 즉시 귀가조치 불가 시 일시적 관찰실 대기 후 보호자에게 인계
수시	일과시간 중	열감, 건강상태 이상 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	- 일시적 관찰실 위치: 1층 보건실 옆 교실

■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



■ **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** (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)

대상자	등교중지 기간	출결증빙 자료
확진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원치료통지서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을 시행규칙(별지 제 22호 서식)
격리 통지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격리통지서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<유의사항> - 다만,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, 학생은 등교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거인의 격리통지서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	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문자 통지 사본 등)
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(임상 증상 발현 학생)	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(호전) 시까지 ※ 참고사항 ▶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	[코로나19 검사 결과 '음성'인 경우] •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(발급 가능 시), 문자 통지 사본 등)
		[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] -선별진료소에 '전화로 문의'했더니 '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 진료를 권유 받은 경우' • 학부모의견서,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, 병원방문시 진료확인서 등 ★ 학부모의견서에 학부모의 선별진료소 문의/방문 사실 기록 필수! ※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발급 가능 시 권장) ※ 고사 기간 중 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(예: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, 진료확인서,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) ☞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
기저질환(천식, 호흡기질환 등)이 있는 고위험군	의사진단서(소견서)에 따름 *단,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심각", "경계" 단계인 경우에 한하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(이외에는 질병결석)	*학기초-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*이후-학부모 의견서

< 현재 >

1. 학생 본인이 37.5℃ 이상 발열 또는 발열감이 있나요?

단, 기저질환 등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에 발열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제외

2. 학생에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*이 있나요?

* (주요 임상증상)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 또는 폐렴. 단, 기저질환 등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에 다음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제외

3.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?

※ <방역당국 지침>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, 확진자와 접촉자 등은 자가격리 조치. 단, 직업특성상 잦은 해외 입·출국으로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

< 변경 후 >

1. **학생 본인**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*이 있나요?

* (주요 임상증상) 체온 37.5℃ 이상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 또는 폐렴(단,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제외)

2. **학생 본인**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?

3. **학생 본인**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?

※ <방역당국 지침>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, 확진자와 접촉자 등은 자가격리 조치. 단, 직업특성상 잦은 해외 입·출국으로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